

영등포구의회
제17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정선희 의원 대표발의】



2013. 9. 9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39호로 2013년 9월 3일 정선희 의원외 7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아토피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에게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- 나.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구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아토피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

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- 마. 아토피 체험시설 설치·운영 등 아토피성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(주요 질병관리체계의 확립)
-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)
-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(건강생활 지원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아토피 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조에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4조에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5조 및 제7조에 아토피 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안심학교를 지정하고 아토피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6조에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토피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의 예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금년도에 우리구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사업 지침에 따라 시비 50%를 포함한 총 2,000만원의 사업 예산으로 아토피 안심학교 및 건강캠프 운영, 아토피 스크리닝 설문조사 및 검사, 식품알레르기 예방교육, 아토피·천식 환아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,
-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더욱 폭넓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.

참 고 자 료

1 보건 의료 기본법

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·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(慢性疾患)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17]

2 국민건강증진법

제6조(건강생활의 지원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